

WTO/TBT 통보문은 WTO 회원국들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기술규정, 표준, 검사와 인증제도의 제·개정 사항을 WTO사무국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WTO/TBT 제도 총괄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TBT 통보문 접수, 발송 및 질의처 운영은 산업 분야별로 3개 정부기관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TBT 협정에 의거 1996년 2월 공산품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WTO/TBT 공식 질의처로 시정년 이후, 국내 기술 규정안의 WTO 통보, 외국인 TBT 통보문의 접수 및 보급, 외국으로부터의 TBT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우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서 통보되는 각국의 공산품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해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를 2007년 2월 7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TBT 포털사이트 Know TBT(www.ktbt.kr) → TBT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문의 :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02-509-7254~7257/tbt@kats.go.kr)

통보문 통계

- 대상기간: 2011.7.25~7.31
- TBT 통보문 건수: 총 8개국 32건
(부록·수정문 제외, 기술규제·개정: 4개국 24건)

• 국가별 통계

국가	건수	누계	국가	건수	누계
이스라엘	10	41	미국	105	
필리핀	9	22	유럽연합	82	
유럽	4	32	브라질	66	
인도네시아	3	13	중국	53	
브라질	3	68	캐나다	32	
미국	1	105	멕시코	30	
한국	1	24	일본	10	
중국	1	53	합계	366	
총합계	32	408			

* 비교-주요 국가 통보건수(2011)

• 대분류별

분야	건수	누계
식약식품	12	377
건설	11	43
화학세라믹	3	106
전기전자	2	112
기계	1	30
에너지	1	50
생활용품	1	73
소재나노	1	10
총합계	32	756

주요 내용

-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REACH)에 대해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제정한 EC 규제 제1907/2006호의 부속서 XIV을 수정하는 위원회 규정안(CG/TBT/N/EEC/390)
 - 본 통보문은 EU REACH 규정(Regulation (EC) No 1907/2006)에 프탄산(酸)다이소부틸(DIBP), 산산화이비소, 오산화이비소, 크롬산납, 크로뮴산납-황산납 옐로우(C.I. Pigment Yellow 34), 납크롬산올리브(신염 황산염 레드(C.I. Pigment Red 104), 트리소(2-클로로에틸)인산염(TOEP), 2,4-디니트로톨루엔(2,4 DNT) 8개 신규물질 등록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 8개 물질은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이 REACH의 허가대상물질목록(부속서 XIV)에 포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임.
 - 8개 신규물질을 추가하는 통 규정은 관보 게시일로부터 3일 세 되는 날 발효하여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적용됨. REACH 허가대상물질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을 EU 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ECHA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대체물질을 개발하거나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추가되는 물질을 계속해서 이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각 화학물질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유럽화학물질청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이용 또는 판매 허가를 신청해야 함. 허가를 얻지 않는 경우, 각 화학물질별로 이용 또는 판매 금지일이 명시되어 있음. 계속해서 해당 화학물질을 이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또는 판매 금지일로부터 최소 18개월 전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함. 이번엔 새로이 추가되는 8개 화학물질에 대한 허가 신청기한과 허가를 얻지 않는 경우, 이용 또는 판매 금지일이 주어짐.

**통보문
통계**

• 대상기간: 2011.7.18~7.24
 • TBT 통보문 건수: 총 7개국 22건
 (부록·수정문 제외, 기술규제·개정: 6개국 2건)

• 국가별 통계

국가	건수	누계	국가	누계
카타르	9	27	미국	104
유럽	3	78	유럽연합	78
한국	3	23	브라질	65
바레인	2	26	중국	52
브라질	2	65	캐나다	38
캐나다	2	38	멕시코	30
인도	1	1	일본	10
총합계	22	258	합계	377

* 비교-주요 국가 통보건수(2011)

• 대분류별

분야	건수	누계
식약품	14	315
바이오환경	2	15
전기전자	2	92
수송물류	2	96
소재나노	1	204
생활용품	1	78
총합계	22	800

**주요
내용**

가. [유럽연합] 가정용 회전식 빨래건조기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하여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제정한 2010/30/EU 지침을 보완하는 위원회 위임 규정 안(G/TBT/N/EEC/386)

- 본 통보문은 가정용 전기 빨래건조기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95/13/EC 지침을 대신할 2010/30/EU 지침을 보완하는 규정(Regulation)을 통보한 것임. 동 규정은 EU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고 직접 적용됨.
- 동 기술규정은 전기 및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회전식 빨래건조기와 붙박이형(built-in) 빨래건조기에 적용되며, 가정용 세탁 겸 건조기(washer-drier)와 탈수기(spin-extractor)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급자와 판매업자는 제품의 상단 또는 전면 외부에 라벨을 부착하고 제품설명, 기술문서 제공 및 광고에 에너지 효율 등급 등을 표시하고 특정 기술요소(technical parameter)를 표시해야 함.
- 라벨의 양식과 라벨에 표시되는 정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음. 동 규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발효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제 적용됨.

**통보문
통계**

• 대상기간: 2011.7.11~7.17
 • TBT 통보문 건수: 총 12개국 24건
 (부록·수정문 제외, 기술규제·개정: 9개국 20건)

• 국가별 통계

국가	건수	누계	국가	누계
바레인	6	24	미국	104
필리핀	3	13	유럽연합	78
오만	3	20	브라질	63
아랍에미리트	3	31	중국	52
유럽	2	75	캐나다	36
스웨덴	1	6	멕시코	30
캐나다	1	36	일본	10
태국	1	30	합계	370
사우디아라비아	1	62		
호주	1	6		
브라질	1	63		
한국	1	20		
총합계	24	386		

* 비교-주요 국가 통보건수(2011)

• 대분류별

분야	건수	누계
식약품	9	282
건설	4	37
화학소재/막	3	95
전기전자	3	93
수송물류	3	93
생활용품	2	77
총합계	24	672

**주요
내용**

가. [사우디아라비아] 정격전압 18/30kV용 종이절연 금속시스 케이블(구리 및 알루미늄 도체 포함, 가스압 및 유입(oil filled) 케이블 제외)-Part 1: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G/TBT/N/SAU/254)

- 본 통보문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 도량형, 품질기구(SASO)가 IEC 국제표준인 IEC 60055-1 Ed 5.1/2005를 아무런 기술적 수정 없이 채택함으로써, 정격전압 18/30kV까지의 종이절연금속피복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방법을 통보한 것임.
- 사우디아라비아가 채택한 동 표준은 정격전압 0, 6/1kV에서 18/30kV까지의 종이절연금속피복 합성케이블의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정격전압 3, 6/6kV에서 18/30kV인 케이블의 부속품에 대한 형식시험을 포함. ☺